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724호, 2023.9.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③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착하여야 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별표 5의25에 따른다.

제108조의2의 제목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연료소비율:”을 각각 “에너지소비효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료소비율 및”을

“에너지소비효율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연료소비율:”을 각각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가지주행 :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 -5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가지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2. 정속주행 :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의2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2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3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③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때에는 별표 5의25에 따른다.
<신설>	
제108조의2(연료소비율)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① - 에너지소비효율----- 1. ----- 에너지소비효율: -----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2. ----- 에너지소비효율: -----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3. ----- 에너지소비효율: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에너지소비효율 ----- -----.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1. ----- 에너지소비효율 및 ----- 에너지소비효율: ----- -----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2. ----- 에너지소비효율: ----- -----
<신설>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

	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가지주행 :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 -5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가지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2. 정속주행 :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	--